

내부회계관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 규정'이라 한다)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볼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평가·보고하는데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함으로써 재무제표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내부회계관리제도'라 함은 내부회계관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운영되는 내부통제제도로서, 이 규정과 이를 관리 운영하는 조직을 포함한 모든 조직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을 말한다.

② '내부회계관리자'라 함은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대표이사에 의해 지정된 자를 말한다.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라 함은 일정기간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이 효과적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로서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점검절차 및 감사의 내부회계관리 제도 운영실태 평가절차를 포함한다.

제2장 회계정보의 관리

제4조 (회계정보처리의 일반원칙) ①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지 아니하고 회계정보를 작성하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해서는 아니 된다.

② 회계정보의 식별·측정·분류·기록 및 보고 등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5조 (회계정보의 식별, 측정, 분류, 기록 및 보고) ① 회계정보에 대한 식별·측정·분류·보고 등 회계처리방법 및 회계기록에 관한 사항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리하되,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 한다.

1. 재무상태표에 기록된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2. 재무상태표에 기재되어 있는 자산은 회사가 소유권을 기표하고, 부채는 회사가 지급할 의무를 기표한다.
3. 거래 또는 사건이 회계 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4. 모든 자산, 부채, 거래 또는 사건은 재무제표에 완전히 기록되거나 공시된다.
5. 재무제표상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은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정금액으로 표시한다.
6. 회계거래나 사건은 재무제표에 적정한 금액으로 기록하고, 수익이나 비용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적절한 회계기간에 배분한다.
7. 재무제표 구성요소는 제4조의 일반원칙에 따라 분류, 기술 및 공시된다.

② 모든 회계 정보는 기본 거래 또는 사건을 뒷받침하는 원본 문서와 함께 회계 원장(전산운용시스템)에서 유지 관리되는 정보 포함)에 기록되어야 한다.

③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작성한 회계정보는 정기적으로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6조 (회계기록의 관리·보존) ① 회계장부는 보조원장, 총계정원장 등의 회계보조장부와 재무제표로 구성된다.

② 회계장부는 전산운영시스템에 의한 전산장치에 보관하며, 회계장부에 대한 접근 및 수정은 권한이 승인된 자에게만 허용되고 기록되어야 한다.

③ 회계정보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의해 작성된 회계정보를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회사는 회계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및 파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안절차, 접근통제절차 등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 및 운영

제7조 (대표이사) ①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②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부회계관리자를 지정한다.

1. 회계 또는 내부통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출 것

2. 상근이사일 것. 단, 상근이사 중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없는 경우 제2호는 '해당 이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 보아 이를 적용한다.

③ 대표이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한다. 단,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에 대한 보고는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대표이사는 제3항 단서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보고를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보고 전에 그 사유를 이사회 및 감사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0조 제4항에 따른 감사 또는 감사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 당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유를 감사 또는 감사

인에게 문서로 제출한다.

제8조 (내부회계관리자) ①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총괄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한다.
- ③ 내부회계관리자는 제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및 감사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한다.

제9조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지시 등) ① 회사의 대표자 기타 임직원이 회계정보담당자에게 이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회계정보를 작성하게 하거나 공시할 것을 지시하는 경우에 해당 회계정보담당자는 이를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내부회계관리자는 제1항의 보고를 받은 후 해당 지시가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의 소집을 청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의해 보고받은 내부회계관리자는 보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의 보고의무) ①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매사업연도마다 보고하고, 동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② 감사는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감사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표이사에게 위반내용의 시정 등을 요구한다.
- ③ 감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 등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한다.
- ④ 감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 대표이사에게 필요한 자료, 정보 및 비용의 제공을 문서로 요청할 수 있다.
- ⑤ 감사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

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한다.

제11조 (평가결과 공시) ①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이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4.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② 제1항의 사업보고서에 첨부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3호의 양식을 참조한다.

제4장 보 칙

제12조 (관련 규정 위반의 조치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위반한 임직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인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1. 규정에 위반한 회계정보를 작성하는 경우
2. 회계정보를 위조, 변조, 훼손 및 파기하는 경우
3. 규정에 위반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설계·운영 및 평가·보고하는 경우
4. 상기 각호를 지시하는 경우

제13조 (규정의 제/개정) ①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감사의 승인 및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령, 다른 규정 등의 변경 및 조직체계의 변경 등에 의한 단순한 자구

수정 및 용어변경 등 경미한 내용은 이사회 사후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감사와 이사회는 제정 및 개정의 사유를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 시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